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61호

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6호(2008.06.05.)로 결정된 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 고시일	일몰기한	비고
기정	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	13,122.5	2008.6.05.	2020.03.02	-
변경					2022.03.02	2년 연장

※ 일몰기한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02.08.)」 부칙 제5조 3항 적용

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
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9) 또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86-656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62호

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11.29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3호(2009. 8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7호(2009.9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56호(2010.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25호(2010.4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69호(2010.7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3호(2011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9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77호(2011.9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2호(2011.10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53호(2011.12. 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6호(2012.1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14호(2012.5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7호(2013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호(2013.2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15호(2013.4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43호(2013.5.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56호(2013.5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7호(2013.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97호(2013.9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37호(2013.10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74호(2013.1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01호(2013.11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47호(2013.12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82호(2014.8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3호(2014.9.4.),